- \* 필리핀 전자상거래 법
- \* 요약본
- \* 본 법의 목적은 전기장치나 광학 장치 등 전자데이터 메시지 혹은 전자문 서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정부 및 일반 부문의 전자 거래의 이용을 촉진하고, 국내 및 국제 거래, 협약, 협정 계약 교환 및 정보 저장의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전자데이터문서와 전자문서의 경우에 문서로 작성된 서류와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됨을 밝히고 그 요건을 정한다.
- \* 전자 서명 등에 관하여 전자서명은 그 관련자가 서명한 것과 전자서명이 수정된 경우에는 관계인이 수정했다는 것이 추정됨을 규정한다.
- \* 법령에서 문서의 원본을 나타내도록 한 경우에는 처음 전자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그 완전성을 입증하고 제 3 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전자데이터 메시지와 전자문서를 나타낸다.
- \* 법적 절차에서, 증거법의 적용에 있어서 전자 데이터 메세지나 전자문서의 적용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 \* 당사자들간에 다르게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 청약의 승낙 기타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계약체결의 요건에 관한 형식은 전자데이터메세지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서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계약도 전자데이터 메세지나

전자문서의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의 집행력이나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고 현행법에서 계약의 형식요건으로 하는 어떤 요소라도 전자 데이터 메세지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설명되고 입증된다

- \* 은행간 네트워킹이나 기업간 링크로서 이루어진 전자거래 등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실제적 현금이나 채무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 수신인은, 발송인과 수신인 사이에서 수신인이 전자 데이터 메세지나 전자문서를 발송인의 의도로 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수신인이 불성실한 주의의무이행으로서 수신한 전자데이터 메세지나 전자문서가 잘못된 전달로 인해서 수신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전자데이터 메시지나 전자문서의 발송시점에 관한 규정
- -발송인와 수신인 간에 합의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 데이터 메시지 혹은 전자 문서의 발송은 발송인이나 발송인을 대신하여 전자 데이터 메시지나 전자문서를 보낸 사람이 외부에서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 전자데이터 메시지나 전자문서의 수신시점에 관한 규정:
- -수신인이 전자 데이터 메시지 혹은 전자문서를 수신할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한 경우, 그 수신은 전자 데이터 메시지 혹은 전자 문서가 설계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점.

- 전자 데이터 메시지 혹은 전자 문서가, 설계된 정보 시스템이 아닌 수신인의 정보 시스템으로 보내진 경우, 수신은 수신인이 전자 데이터 메시지 혹은 전자문서를 검색하는 시점
- 수신인이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은 경우, 그 수신은 전자 데이터 메시지 혹은 전자문서가 수신인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점
- \* 전자 데이터 메시지 혹은 전자 문서 발송 및 수신 장소:

발송인과 수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 데이터 메시지혹은 전자 문서는 발송인이 사업장을 가진 장소에서 발송되고 수신인이 사업장을 가진 장소

- \* 정부가 전자데이터 메시지와 전자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정부 및 일반 대중이 전자 문서 혹은 전자 데이터 메세지의 사용을 위한 RPWEB을 추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본 법의 위반의 경우에 벌금 및 징역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